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58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6월 19일
발 의 자 : 박성연, 곽향기, 김영철, 김원중, 김춘곤, 신복자, 윤영희, 이상욱, 이은림,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진혁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먼 거리의 훈련장까지 여러 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있고, 접근성이 낮은 훈련장에 입소하는 경우 과도한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예비군의 훈련 참여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예비군훈련장 관리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고 그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그 차량 운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비군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예비군대원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대원의 긍지와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대원”이란 「예비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예비군대원으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예비군훈련장”이란 제1호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부대장”이란 제2호에 따른 예비군훈련장을 관리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예비군대원의 입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고자 하는 부대장이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차량운행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서울특별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